



# 공사 특기 시방서

< 역사 PJ창호 설치공사 >

2016.05

	담 당	부 장	실(소)장	본부장
결 재	이승환		전결	

**B&G Metro**

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

## 제1장 총 칙

### 1-1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(이하 "갑"이라 한다)가 발주한 "역사 PJ창호 설치공사"에 적용하며,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.

#### 1.2 작업일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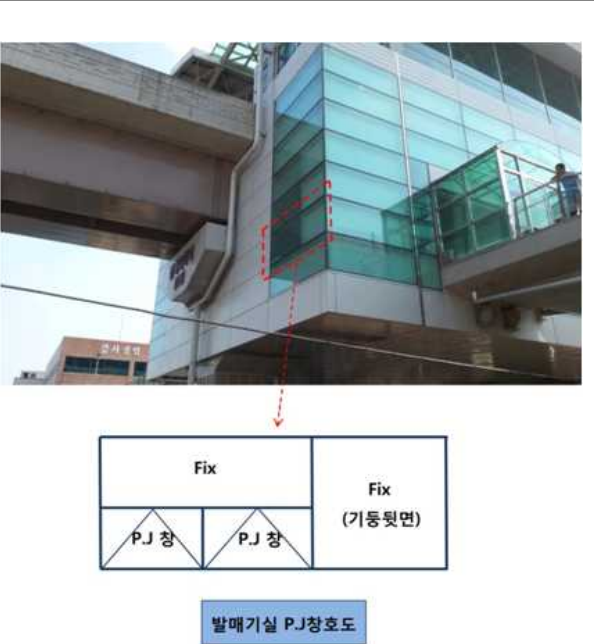
- (1)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"갑"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.
- (2) 계약상대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, 위험표지판,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자재는 KS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, 자재 반입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시공기간 동안 타공중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.
- (5)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6)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기지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,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.
- (7)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"을"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(8) "을"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(전, 후)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. (사진첩 1부,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, 기타 필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CD-DISC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.)

## 제2장 시 공 내 용

### 2-1 공사장소 및 범위

- (1) 공사장소 ; 18개 역사 고객지원실 및 발매기실
- (2) 공사범위 ; 각 역사 FIX창호 PJ창호로 교체
- (3) 공사무량 ; 상세물량 공내역서 참조 (18mm복층, 반강화, 방충망포함)
  - 총16개역사 ; 쾌법르네시떼, 서부산유통지구, 공항, 덕두, 등구, 대저, 대사, 불암, 지내, 김해대학, 인제대, 김해시청, 부원, 봉황, 수로왕릉, 장신대
  - 방충망만 설치역사(2개역사) ; 박물관, 연지공원

(4) 시공관련 참고도면

설치위치 사진	주의사항
 <p>발매기실 P.J창호도</p>	<p>▶ 설치작업관련 중점관리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위 작업시 도로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철저</li> <li>- 창호 해체시 안전관리철저(추락방지)</li> <li>- 우천시 작업순연</li> </ul>
타입A(13개역사)으로 변경	타입B(3개역사)으로 변경

## 2-2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과 검사

### 2.2.1 재료

- (1) 후레임은 THK.120 칼라알미늄 후레임에 불소수지코팅(단열바)로 시공하여야 하며, 창은 THK.18 저반사 칼라복층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프로젝트 창의 색상은 현 시설물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한다.
- (3) 모든 부재는 녹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(4) 복층유리는 기밀/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5) 금속공사 시공 및 조립방법(허용오차포함)은 일반공사시방서 내용을 따른다.
- (6) 시공 후 흔들림이 없고 외부 풍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.
- (7) 창호 설치시 주의하여야 하며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설치시 외관도장이 벗겨져서는 안된다.

### 2.2.2 시공시 주의사항

- (1)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작업한다.
- (2) 고소작업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구류는 줄로 매달아 사용한다.
- (3) 작업시 철골구조물 훼손을 최소화 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(4) 기타 필요시 현장감독자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.

### 2.2.3 검사

- (1) 설치완료후 자체검사 실시하고,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.
- (2)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.

### 2.2.4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

- (1) 검사완료 후 “을”이 대금지급 의뢰를 “갑”에게 요청하면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.

##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

- (1) 작업장에는 “작업중”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.
- (2)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.
- (3)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

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, "갑"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될 시는 "갑"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"갑" 또는 "을"의 손실을 전액 "을"이 부담한다.

- (4) "을"은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, 절도, 불법단체 결성 난동, 작업방해 및 속칭 "사보타지"를 하는 자, 제반 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.
- (5) "갑"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,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, 즉시 추방해야한다. "을"이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,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"을"의 책임이다.
- (6)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, 이에 따른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.

#### 제4장 품질 보증 기간 (하자 기간, 하자보수보증금율)

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“갑”의 회계규정,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.